

울산지방법원 2021. 11. 5 선고 2021가단444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0. 22.

판 결 선 고 2021. 11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8. 9. 5. 접수 제539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강경숙

별지